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아래의 범죄 혐의로 고소하오니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아래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시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거침입

피고소인은 2023. 9. 2. 08:50경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합니다) 807호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 이르러 고소인이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연 틈을 이용해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퇴거불응

(1) 피고소인이 위 1항과 같이 고소인의 주거에 침입하자, 고소인은 즉시 이 사건 오피스텔 거실에서 피고소인에게 “여자 혼자 사는 자취방에 들어오시면 불편하다. 지금 속이 안 좋고, 피곤하니까 더 이상 술을 못 마실 것 같다. 나가달라” 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거실에 앉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고소인은 2023. 9. 2. 09:40경 이 사건 오피스텔 807호 거실에서 피고소인에게 “선배님 잠은 학교 남자 휴게실 가서 주무시는 게 어떠시겠냐? 여자 후배 집에 남자선배가 들어왔다는 걸 혹시 누가 알게 된다면 선배님 이미지상 안 좋을까봐 걱정돼서 그렇다” 는

식으로 피고소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완곡히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위와 같이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807호 거실에 드러누워 눈을 감은 채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고소인은 2023.9.2.10:00경 또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 807호 거실에서 피고소인에게 “선배, 여자후배 집에 남자선배가 들어오면 여자후배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토할 것 같고 힘드니까 술은 다음에 꼭 같이 마실 테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자” 는 식으로 완곡히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위와 같이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토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그 이후에도 고소인은 몇 차례에 걸쳐 계속 “나가주세요” 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음에도 피고소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소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강제추행

(1) 피고소인은 2023.9.2.09:00경 이 사건 오피스텔 807호 고소인의 집 거실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인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점점 가까이 고소인의 몸 쪽으로 다가와 피고소인의 얼굴과 고소인의 얼굴이 거의 5cm거리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몇 번에 걸쳐 고소인의 머리카락을 지속적으로 만져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강제추행하자 고소인은 너무 싫고 무서워서 점점 뒤로 물러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벽에 닿아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그 때부터는 피고소인이 고소인 옆자리로 와서, 고소인 손목을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고소인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고소인의 옆구리를 찌르고 어깨를 잡고, 팔을 더듬고, 머리카락을 터치하고, 무릎을 터치하고, 고소인이 원피스를 입은 상태임에도 고소인의 허벅지에 피고소인의 손을 올려놓고 터치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소인은 잡고 있었던 고소인의 손목을 풀어주고는 갑자기 옆으로 드러누우면서 피고소인 머리를 자신의 손목으로 받쳤다. 이 때 고소인은 원피스를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피고소인이 누운 각도에서 원피스 안을 볼까봐 고소인은 얼른 다리를 가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소인은 2023. 9. 2. 09:40경 이 사건 오피스텔 807호 고소인의 집 거실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검열을 하다가, 겁먹고 위축된 상태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 있던 고소인에게 갑자기 진득한 분위기로 다가오면서 “계속 앉아서 얘기를 더 하자, 자기 옆에 앉아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터치하려고 하자, 고소인은 재빨리 일어나서 거실 구석으로 가 강제추행을 피하였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선배가 앉으라고 하는데 감히 후배가 말을 안 듣고 서 있냐? 내가 우습냐?” 라고 말하면서 혼자서 화를 내다가 갑자기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망법위반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피고소인은 2023. 9. 2. 09:22경 이 사건 오피스텔 807호 거실에서 고소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고소인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고소인 휴대폰 카톡 채팅방을 검사하기 시작하고, 피고소인 이름을 검색하여 무슨 대화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동현 에바다’ 라는 톡을 발견하였고, 그 순간부터 엄청 분노하면서 화내더니 “너랑 xxx한테 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 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다가 “너희 둘이 학교 선배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우습게 본다고 다 말할 거고 가만 안 둘 거다. 너네 두고 봐라” 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피고소인은 2023. 9. 2. 09:40 ~ 09:50경 이 사건 오피스텔 807호 거실에서 고소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또다시 고소인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고소인 휴대폰에 자신의 이름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하면서 자신에 대한 대화가 하나라도 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법 제49). 피고소인은 2023. 9. 2. 10: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자마자 자신과 대학동기인 남현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ooo과 xxx이 카톡으로 선배 욕을 한다.” 는 식으로 말하면서 고소인과 그 친구 xxx 간의 카톡 내용을 자신의 친 남현승에게 누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함으로써 정보통신

방법을 위반하였다.

5.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1) 피고소인은 2023. 9. 2. 10:00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나가자마자 자신과 대학동기인 남현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잠을 잔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현승에게 “나 000 집에서 잤다.” 라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피고소인은 2023. 9. 2. 오후 2~3시경 자신의 집에서 학교 후배인 xxx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잠을 잔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00경에 대학동기인 남현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 000집에서 잤다.” 라고 남현승에게 자랑스럽게 말한 내용을 다시 xxx에게 말하였고, “어차피 개(고소인)가 여자니까 공론화시키지 못할 거다. 여자니까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상담요청 취지

학교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학교 인권위원회에 알리고, 학교측 조언에 따라서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학교 선배는 학교내에서도 평판이 안 좋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기피 인물로 알려질 정도로 행실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9월초에 사건이 일어난 후, 경찰서에서 관련 CCTV 확보와 핸드폰 포렌식을 했고, 학교 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추행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가해자는 학교측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등교를 못하게 하고, 줌수업을 통해서 학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현재는 휴학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발생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연히 길에서 차 안에 앉아 있는 가해자를 목격하자마자 다시 예전일이 상기되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공황상태를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 경찰은 CCTV, 카톡 모두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검찰 송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며 거짓말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여 예약을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 담당 조사관은 PTSD 진단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을 수 없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돌려보냈습니다.

현재 담당 경찰관은 모든 정황이 검찰에 송치하기에는 약하고, 가해자는 모든 정황을 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으면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설사 불명이나 진실이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피해자가 자기 진술에 대해 당당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합니다.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서 사건이 일어난 후 3개월이 되는 이 시점에서는 정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회복됐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거짓말 탐지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사건 담당 경찰관이 귀뜸을 해주었고, 이 진단서는 경찰에 제출할 필요도 없고 증거로 사용이 되지 않을 거라고 피해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거짓말 탐지조사를 위해서 이런 진단서를 받는다는 것이 불편합니다. 지금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아직도 그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 장면을 생각하기도 싫고, 가해자를 생각만 해도 불쾌하고 불안해서 숨이 멎을 듯 합니다. 즉 아직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PTSD 인 상황인데, 이것을 거짓말 탐지조사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진단서를 받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의사는 이런 진단서를 써주면 그 동안에 PTSD 가 있었다는 진단도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걱정합니다.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겪는 환자에게 정상이라는 소견을 써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거짓말탐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받아낸 진단서가 검찰 기소단계나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검찰 송치를 위해서 하겠다는 경찰의 조언과 진행 방향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가해자를 위한 것인지 매우 의심이 가고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을지 망설여집니다.